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10조).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II. 검토의견

1. 예방대책과 시행계획의 관계 명확화(안 제10조)

안 제10조제1항은 지역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 에 따라 <u>지역의 학교폭 력 예방대책</u> 을 매년 수 립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의 기능 등) ① ----- ----- <u>시행계획을 포 합하여 지역의 학교폭 력 예방대책(이하 “예 방대책”이라 한다)</u> -----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의 기능 등) ① ----- ----- <u>지역의 학교폭 력 예방대책(이하 “예 방대책”이라 한다)</u> ----- ----- <u>.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u>

2.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 규정 명확화(안 제11조의2제4항)

현행법 제11조의2 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교육감만 규정하고 있는데¹⁾ 안 제11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4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5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경력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제7항).

교육장이 교육감과 함께 위와 같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 및 범죄경력조회 확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²⁾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1조의2제4항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직원 및 조사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되는 대상은 외부 전문가이며³⁾, 관계 직원의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를 하도록 지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였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및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u>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u>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3) 위촉은 외부 전문가나 외부 인사를 특정 직책 등에 임명할 때 사용됨.

	<u>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 학생·가해학생·목격 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요한 경우 <u>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u>요청하게 할 수 있다.</u></u>
--	---	---

3. 범죄경력조회의 목적 명시 및 법률용어로 용어 변경 등(안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

안 제11조의2제7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조회의 목적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교폭

력 조사·상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법문에 명시하고, 범죄 전력 조회 등의 용어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정의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률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그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u><신 설></u>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u>⑦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항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u>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u>⑦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u>

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입법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u>하여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조사·상담자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u>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	---	---

4. 시행일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안 부칙 제1조는 제6조(기본계획⁵⁾의 수립 등) 및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등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⁵⁾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의미함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제6조제2항(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 교육감 의견 수립 의무 신설) 및 제3항(교육감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신설), 제10조제1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시 시행계획 내용 포함 의무 신설)의 개정규정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제5차 기본계획('25-'29)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수립하는 제6차 기본계획('30년-'34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게 됨.

즉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예방대책 관련 개정규정 모두 개정 취지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개정규정의 실효성이 2030년까지 미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개정취지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즉 2025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제5차 기본계획('25-'29)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규정 시행일 및 적용례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바 이를 주서에 반영하였음.

개정안	수정의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6조, 제9조⁶⁾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u>기본계획</u> 부터 적용한다.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u>기본계획</u> 부터 적용한다.
---	---

5.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안 제11조의2제4항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6항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결격사유⁷⁾를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1년을 임기로 위촉되어 있고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위촉자들이 위촉되기 전 이미 결격사유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존 위촉자들이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둬으로써 기존 위촉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 신 설 >	제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6) 안 제6조제2항에서 시도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약칭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규정으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함.

7) 안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의 간단한 자구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화 실)